

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안내

(22.5.20. 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)

□ 추진배경

- 코로나19로 요양병원·시설의 접촉 면회를 금지(21.11.18~)해 왔으나,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한시 허용(4.30~5.22)
- 허용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방역상황, 현장 요구,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결정

□ 대면 접촉 면회 허용 연장(안)

CapsLock 방역상황, 현장 요구를 감안해 대면 접촉면회 연장

CapsLock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조건은 일부 완화

- (대상)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

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

<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>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*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-	2차 이상 접종		

*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

*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

(입소자)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, (면회객) 의사소견서 제출

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(해제 후 3일 ~90일 내*)

*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

※ 예: 면회일이 5.23 일인 경우, 2.22-5.20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

○ **(기간)** '22.5.23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

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

○ **(수칙)**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
*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

① **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**

*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

*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(붙임 참고)

② **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,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**

•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하고 음성 확인, 일반 신속항원검사(RAT)로 현장 확인도 가능(면회객이 자가 검사 키트 지참)

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

•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

•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, 음성확인서(SNS, 문자 통지서 등)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

③ **면회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·음료 섭취는 불가**

*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

④ **면회 후,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**

□ **면회대상**

○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
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

- 전파 차단을 위한 **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**

<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>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*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해당 없음	2차 이상 접종		

*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

*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

(입소자)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, (면회객) 의사소견서 제출

- **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(해제 후 3일 ~90일 내*)**

< 격리해제일 예시(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) >

격리해제 일자	2.21일 이전 (90일 이전)	2.22~5.20	5.21-5.22 (2일 이내)	5.23 (면회일)
면회 가능여부	불가	가능	불가	

□ **한시 허용 기간 : '22.5.23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**

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

□ **사전준비**

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교육 실시

*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①격리해제자 또는 ②4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간 자를 배치 권고

②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(문자메시지 등)

※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

1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*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(면회 당일 현장 확인)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

*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

*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RAT검사 제외

2. 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

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*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해당 없음	2차 이상 접종		

*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

*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면회 가능

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

4.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*를 통해 확인합니다

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
5.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.

*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 등

6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

7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
8.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
③ 면회장소 마련

-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
-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

④ 방역용품 준비

-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, 마스크 착용 후 출입
 - * 손소독제 입구 비치,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
-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

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·관리

- 면회객 발열체크, 인후통·기침 등 호흡기 증상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

□ 면회 중 준수사항

-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
-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

□ 면회공간 관리

-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
-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

□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

-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,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
- ② 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
-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